

2013. 4. 25(목) 15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미래부 정책총괄과 최영진 과장(☎2110-2820), 강신욱 사무관(☎2110-2828)
 방통위 기획조정실 박노익 과장(☎2110-1320), 최선경 사무관(☎2110-1321)

미래부-방통위, 정책협력 MOU 체결

- 장·차관급 간담회 정례적 개최 및 인사교류 실시키로
- 단말기 보조금, 유료방송 관련 정책협의회는 즉시 구성하여 운영키로

-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문기)와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경재)는 4.25(목) 오후 3시,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이하 MOU)를 체결하였다.
 - 그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(구)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(신)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·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.
 -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,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.
 - 이번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,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.

- 우선, 양 기관은 장관-위원장, 차관-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, 정책협의회·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또한, 양 기관 간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.
- 아울러,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, 정보통신방송장관 회의·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.
- 한편, 양 기관은 본 MOU 체결 즉시 '단말기 보조금(통신정책국-이용자 정책국)'과 '유료방송(방송진흥정책관-방송정책국)'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 정책협의회(대표 : 해당 국장)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.

〈 MOU 주요 내용 〉

- ◆ (고위급 간담회 등) 위원장-장관, 상임위원-차관 등 간담회 정례화 및 정책 협의회(대표:방통위 기조실장·미래부 융합실장) 구성·운영
- ◆ (분야별 협의체) 뉴미디어·단말기 보조금·개인정보 등 분야별 협의체(대표: 관련 국장·과장) 구성·운영
- ◆ (인사교류) 유기적인 정책협조와 상호간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사교류 실시
- ◆ (정보교환 등) 정책자료·정보 교환 및 공유, 민원지원센터의 운영 협력
- ◆ (기타)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 공동 주관, 방송대상 등 각종 행사 지원, 직원 간 친목을 위해 친목모임 구성 적극 장려

-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“미래부는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”면서 “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·문체부·교육부·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하여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(Hub)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“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”면서, “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·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〈붙임〉 미래부-방통위 간 정책협력 MOU

미래창조과학부-방송통신위원회간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

제1조(목적)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정보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및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“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”간 원활한 정책협력과 양 기관의 직원간 인사교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책협의회) ①양 기관은 장관-위원장 및 제2차관-상임위원(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)간 **간담회**를 정례화하기로 한다.

②양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융합실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하는 상설 **‘방송통신 정책협의회’**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③전 항의 ‘정책협의회’ 외에 뉴미디어, 단말기 보조금, 주파수, 개인정보, 광고 등 정보방송통신 분야 현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 기관의 해당 현안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분야별 **‘실무 정책협의회’**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④양 기관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'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 등 세부 이행 협약서'를 작성하여 본 양해각서 효력 발생 후 빠른 시일 이내에 조속히 체결한다.

제3조(인사교류) ①양 기관간 유기적인 정책협조와 상호간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직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 소속 직원간 인사교류를 실시한다.

②양 기관은 전 항의 인사교류 형태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'인사교류 세부 협약서'를 작성하여 본 양해각서 효력 발생 후 빠른 시일 이내에 조속히 체결한다.

제4조(정보교환) 양 기관은 정보방송통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.

제5조(민원센터 운영) 양 기관은 정보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'민원센터 운영 세부 협약서'를 작성하여 본 양해각서 효력 발생후 빠른 시일 이내에 조속히 체결한다.

제6조(기 타) ①양 기관은 정보통신의 날, 방송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을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노력한다.

- ②양 기관은 ITU 전권회의,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, 방송대상 등 각종 행사에 상호 기관장을 최우선 대우로 초청하며, 이 경우 행사를 주최하지 않는 기관은 해당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상대 기관에 대해 최대한의 인적·물적 지원을 한다.
- ③양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직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조직 소속 직원 간 친목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활동 등 친목모임의 조직을 적극 장려한다.

제7조(효 령)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13년 4월 25 일

미래창조과학부를 대표하여

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하여

미 래 창 조 과 학 부
장 관 최 문 기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위 원 장 이 경 재